

##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26 조례 제29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 기간) ①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관리한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예외지원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원한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3.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한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 건 소	□ 산 모 신 생 아 건 강 관 리 지 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산모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산모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input type="checkbox"/> 분만 취약지 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체크)	
<p><b>1. 개인정보 활용 목적</b>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b>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b>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b>정기적으로</b>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데이터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b>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b>                      같은 법 제34에 따라 <b>5년간</b>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b>파기함을 고지합니다.</b></p>							□	

